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81호

나. 발 의 자 : 이소라 의원 외 18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 또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모은 것을 뜻함.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융자 시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에 있어 용자계정의 용도에 ESG 경영지원을 위한 용자를 추가함. (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이하 “용자계정”)의 용도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자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나. 용자계정의 용도 추가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용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후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을 신설(2018)하고, 사회투자기금과의 통합에 따라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2023)하면서 현재 3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계정별 재원과 용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분류 >

구 분	재 원	용 도	소관부서
용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용자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 ·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 ·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소상공인 담당관
투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사회적 경 제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자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자와 용자 회수금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ESG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ESG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을 제한하는 등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에서 용자계정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시에 사용처를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이라는 자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ESG 경영을 위해 용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용자’ 라는 현행 조례의 용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자를 용도에 추가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용자계정은 종전에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창업기업자금’ 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해 왔다는 점을 볼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용자를 용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기 보다는 용자계정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참고자료]

2023년도 용자계정 자금별 지원대상 및 용자조건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액	지원대상	용자한도, 조건	
합계	16,000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			
시설자금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리 : 4.1% 용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리 : 연 3.8% 용자한도 :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리 : 3.3% 용자한도 :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리 : 3.8% 용자한도 : 3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리 : 2.0% 용자한도 : 2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보전 : 1.8%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이자비용 절감 대환 자금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종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보전 : 1.8%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구분	지원액	지원대상	응자한도, 조건	
특 별 자 금	창업기업 자 금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보전 : 1.8%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안심 일반 금리 사전 채무 조정 자금	5,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보전 : 1.75~2.75%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 금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창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보전 : 2.5%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구분	지원액	지원대상	응자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재기지원자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보전 : 2.5%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